

#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: 공원] 결정[변경]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

2026. 3. 23.(월)  
건설교통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6. 3. 4.

나. 제안자: 인천광역시[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]

다. 회부일자: 2026. 3. 6.

라. 상정일자: 제30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26. 3. 23.)

- 제안설명: 이원주 도시계획국장
- 검토보고: 윤주인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- 심사결과: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소래습지, 해오름공원 등 생태·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신청하여 해양생태 명소로 조성하고자 함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(제25조의 2)」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은 면적 100만㎡ 이상(소유권 확보)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, 개별 공원으로는 법률 기준 충족과 사업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음
- 이에 관련 공원을 통합·재편하여 국가공원 지정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### 1) 개요

- 위 치: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-17번지 일원
- 용도지역: 자연녹지지역
- 내 용: 근린공원: 소래습지, 해오름, 장도포대지  
 → 근린공원(국가): 소래염전생태(1,031천㎡, 지자체 소유)  
 근린공원(지방): 소래습지(700천㎡, 국유지 등)
- 사 업 비: 294억 원
- 제 안 자: 인천광역시장
- 제안사항: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 결정(변경)

### 2) 추진경위

- 2021. 4. : 소래습지 국가공원 추진계획 수립
- 2025. 6. :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
- 2025. 8. : 도시공원법 개정 \*국가공원 조건: 100만㎡이상, 소유권 확보
- 2026. 1. : 관련기관 협의, 주민 공람 등

### 3)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내용

-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1	소래염전 생태공원	근린공원	남동구 논현동 111-13번지 일원	-	증)1,031,523	1,031,523	-	도로와 중복 (257㎡)
폐지	-	장도포 대지공원	역사공원	남동구 논현동 111-13번지 일원	4,264	감) 4,264	-	2011.09.14.	
폐지	-	해오름 공 원	근린공원	남동구 논현동 763-2번지 일원	216,439	감) 216,439	-	2008.12.22.	
변경	-	소래습지 공 원	근린공원	남동구 논현동 1-17번지 일원	1,511,706	감) 811,391	700,315	2000.10.31.	

## -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공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신설	소래염전 생태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원 신설 : 면적 1,031,523㎡</li> <li>도로(중로 1-302호선)와 일부 중복(257㎡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래습지생태(공유지 구간)·장도포대지·해오름 공원을 통합(신설) 정비</li> <li>고가도로 하부 등 공원(중복) 결정</li> </ul>
폐지	장도포대지 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원 폐지 감) 4,264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래염전생태공원 편입</li> </ul>
폐지	해오름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원 폐지 감) 216,439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래염전생태공원 편입</li> </ul>
변경	소래습지 공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명칭변경: 소래습지생태공원 → 소래습지공원</li> <li>면적변경 감) 811,391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유지 구간이 소래염전생태공원에 편입되어 면적 감소</li> </ul>

### 4)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(부서) 협의

○ 주민 공고·열람 : 2026. 1. 26. ~ 2026. 2. 11.

- 의견 없음

○ 관계기관(부서) 협의

- 의견 29건(반영 18, 추후반영 10건, 미반영 1건)

### 5) 향후계획

○ 2026. 4. 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○ 2026. 5.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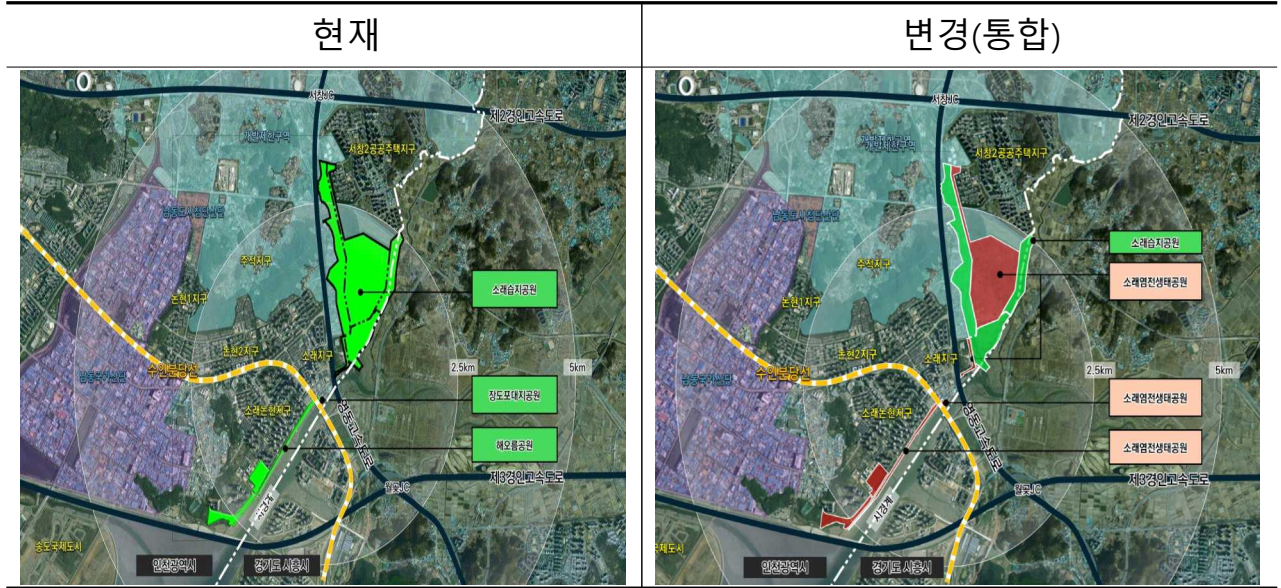
○ 2026. 하반기 : 국가도시공원 신청 예정(인천시 → 국토부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의견청취안은 기존 소래습지공원, 장도포대지공원, 해오름 공원을 통합하여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소래염전생태공원으로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 결정(변경)에 앞서,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6항<sup>1)</sup>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<sup>2)</sup>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.

< 대상지 위치도 >



○ 먼저,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살펴보면,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2<sup>3)</sup>에 따라 국가도시 공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·관리할 필요가 있는 공원으로서,

- 1) 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 ⑥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2) 제22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.
 

라. 공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)
- 3) 제25조의2(국가도시공원의 지정·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, 자연경관 및 역사·문화 유산 등의 보전,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제49조의2에 따른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·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시공원의 면적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, 공원관리청은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(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이내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
- ▶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,
- ▶ 공원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,
- ▶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.

○ 인천시는 이러한 제도적 요건을 고려하여 소래습지, 해오름 공원, 람사르습지, 장도포대지 등을 포함한 약 600만 제곱미터 규모의 ‘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’ 지정을 중·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-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은 이러한 전체 구상 가운데 1단계 사업으로,
- 소래습지생태공원 육지부, 장도포대지공원, 해오름공원 등 약 103만 제곱미터를 우선 통합함으로써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사료됨.

○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를 보면,

- 장도포대지공원과 해오름공원을 폐지하고, 소래습지공원의 일부를 조정하여 소래염전생태공원으로 신설·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원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확인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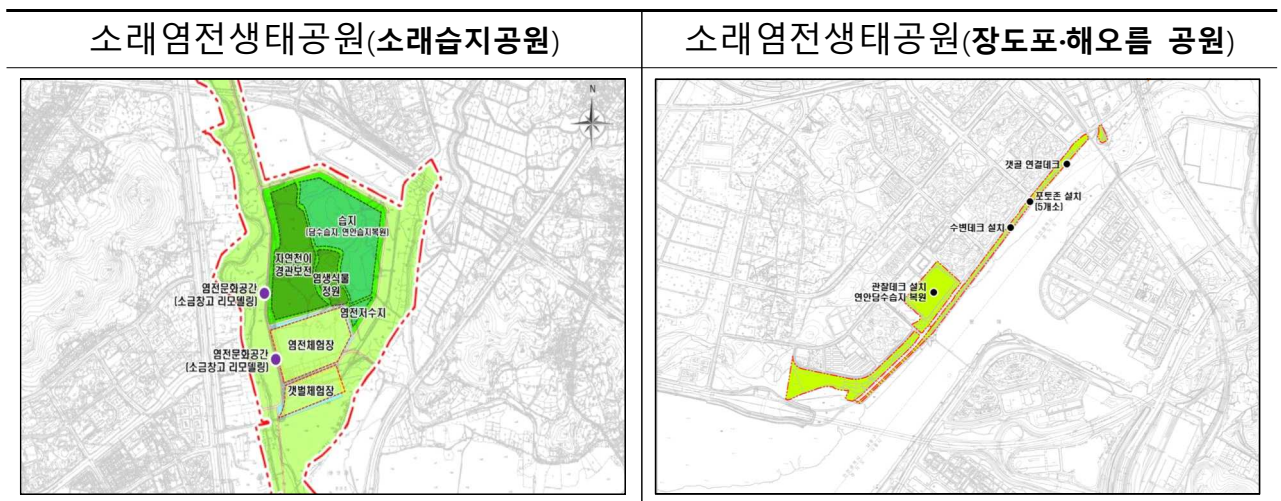
**<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 조서 >**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1	소래염전 생태공원	근린공원	남동구 논현동 111-13번지 일원	-	증) 1,031,523	1,031,523	-	도로와 중복 (257㎡)
폐지	-	장도포 대지공원	역사공원	남동구 논현동 111-13번지 일원	4,264	감) 4,264	-	2011.09.14.	
폐지	-	해오름 공 원	근린공원	남동구 논현동 763-2번지 일원	216,439	감) 216,439	-	2008.12.22.	
변경	-	소래습지 공 원	근린공원	남동구 논현동 1-17번지 일원	1,511,706	감) 811,391	700,315	2000.10.31.	

○ 대상지는

- 소래염전과 갯벌을 중심으로 한 습지 생태 환경,  
해안 조망 기능을 갖춘 해오름공원,  
그리고 장도포대지의 역사·문화 자원이 분포한 지역으로,
- 생태·경관·문화 요소가 복합적으로 형성된 공간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.

< 공원조성계획안 >



○ 다만, 각 공원이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측면은 있으나,

- 이는 전체 국가도시공원 조성 구상 중 1단계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, 향후 단계적 확장을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임.
- 이에 따라 금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적 구역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,
-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온 공원들을 하나의 공원 체계로 재편하여 통합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,
- 장기적으로 약 60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가도시공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○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

-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을 위한 선행 절차로서,
- 장기적으로는 인천을 대표하는 해양·습지 생태공원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특별한 이견은 없음.
- 다만, 장기적으로 약 60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가도시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## 5. 토론요지

○ 소래습지공원·해오름공원·장도포대지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신청하기 위하여 소래염전생태공원으로 통합·재편하여 해양 생태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.

가. 찬 성: 김대중, 석정규, 김종득, 박종혁, 허식 위원

나. 반 대: 없음.

#### 6. 심사결과

○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(재석위원: 5명, 찬성: 5명, 반대: 없음)

#### 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.

붙임 의안본문[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 결정(변경)안  
의견청취] 1부. 끝.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  
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인 천 광 역 시

#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: 2026. 3. .  
제 출 자: 인천광역시장

## 1. 제안 이유

- 소래습지, 해오름공원 등 생태·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신청하여 해양생태 명소로 조성하고자 함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(제25조의 2)」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은 면적 100만㎡ 이상(소유권 확보)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, 개별 공원으로는 법률 기준 충족과 사업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음
- 이에 관련 공원을 통합·재편하여 국가공원 지정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## 2. 관련근거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)  
-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

## 3. 주요 내용

- 위 치 :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-17번지 일원
- 용도지역 : 자연녹지지역
- 내 용 : 근린공원: 소래습지, 해오름, 장도포대지  
→ 근린공원(국가): 소래염전생태(1,031천㎡, 지자체 소유)  
근린공원(지방): 소래습지(700천㎡, 국유지 등)
- 사 업 비 : 294억 원
-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- 제안사항 :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 결정(변경)

#### 4. 추진 경위

- 2021. 4. : 소래습지 국가공원 추진계획 수립
- 2025. 6. :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
- 2025. 8. : 도시공원법 개정 \* 국가공원 조건 : 100만㎡ 이상, 소유권 확보
- 2026. 1. : 관련기관 협의, 주민 공람 등

#### 5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내용

##### ■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1	소래염전 생태공원	근린공원	남동구 논현동 111-13번지 일원	-	증)1,031,523	1,031,523	-	도로와 중복 (257㎡)
폐지	-	장도포 대지공원	역사공원	남동구 논현동 111-13번지 일원	4,264	감) 4,264	-	2011.09.14.	
폐지	-	해오름 공원	근린공원	남동구 논현동 763-2번지 일원	216,439	감) 216,439	-	2008.12.22.	
변경	-	소래습지 공원	근린공원	남동구 논현동 1-17번지 일원	1,511,706	감) 811,391	700,315	2000.10.31.	

##### -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공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신설	소래염전 생태공원	◦공원 신설 : 면적 1,031,523㎡ ◦도로(중로 1-302호선)와 일부 중복(257㎡)	◦소래습지생태(공유지 구간)·장도포 대지·해오름 공원을 통합(신설) 정비 ◦고가도로 하부 등 공원(중복) 결정
폐지	장도포대지공원	◦공원 폐지 감) 4,264㎡	◦소래염전생태공원 편입
폐지	해오름공원	◦공원 폐지 감)216,439㎡	◦소래염전생태공원 편입
변경	소래습지공원	◦명칭변경: 소래습지생태공원 → 소래습지공원 ◦면적변경 감) 811,391㎡	◦공유지 구간이 소래염전생태공원에 편입되어 면적 감소

## 6.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 기관(부서) 협의

○ 주민 공고·열람 : 2026. 1. 26. ~ 2026. 2. 11.

- 의견 없음

○ 관계 기관(부서) 협의

- 의견 29건(반영 18, 추후반영 10건, 미반영 1건)

※ [붙임 5] 참조

## 7. 향후 계획

○ 2026. 4. 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○ 2026. 5.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○ 2026. 하반기 : 국가도시공원 신청 예정(인천시 → 국토부)

붙임 1. 위치도 1부.

2. 현황 사진 1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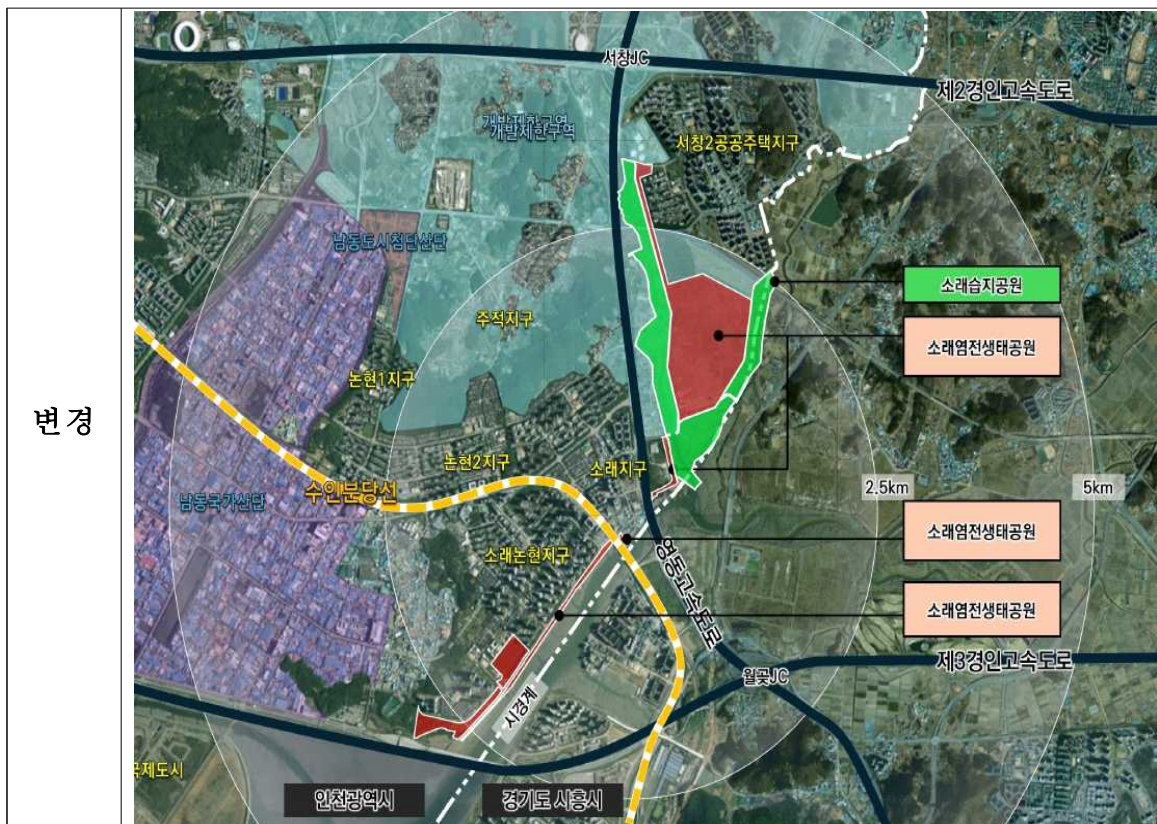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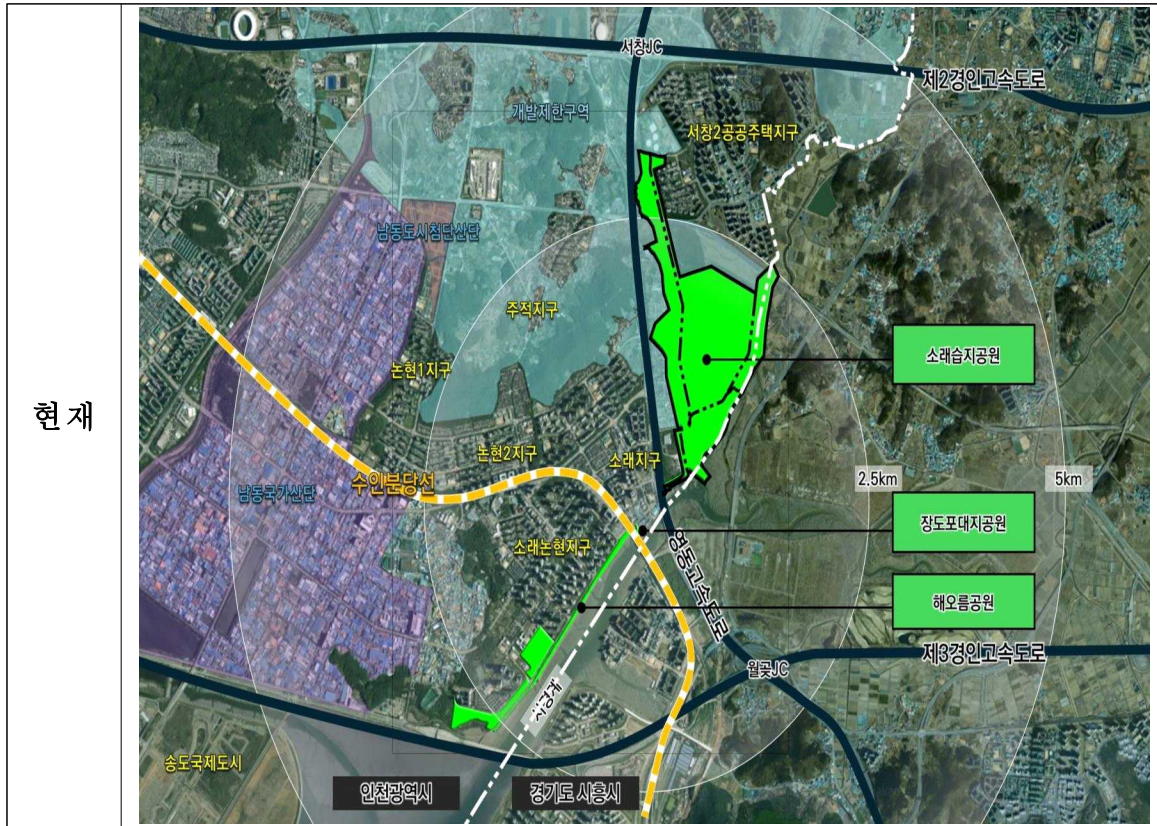
3.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도 1부.

4. 공원조성계획(안) 1부.

5.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.

【붙임 1】

위치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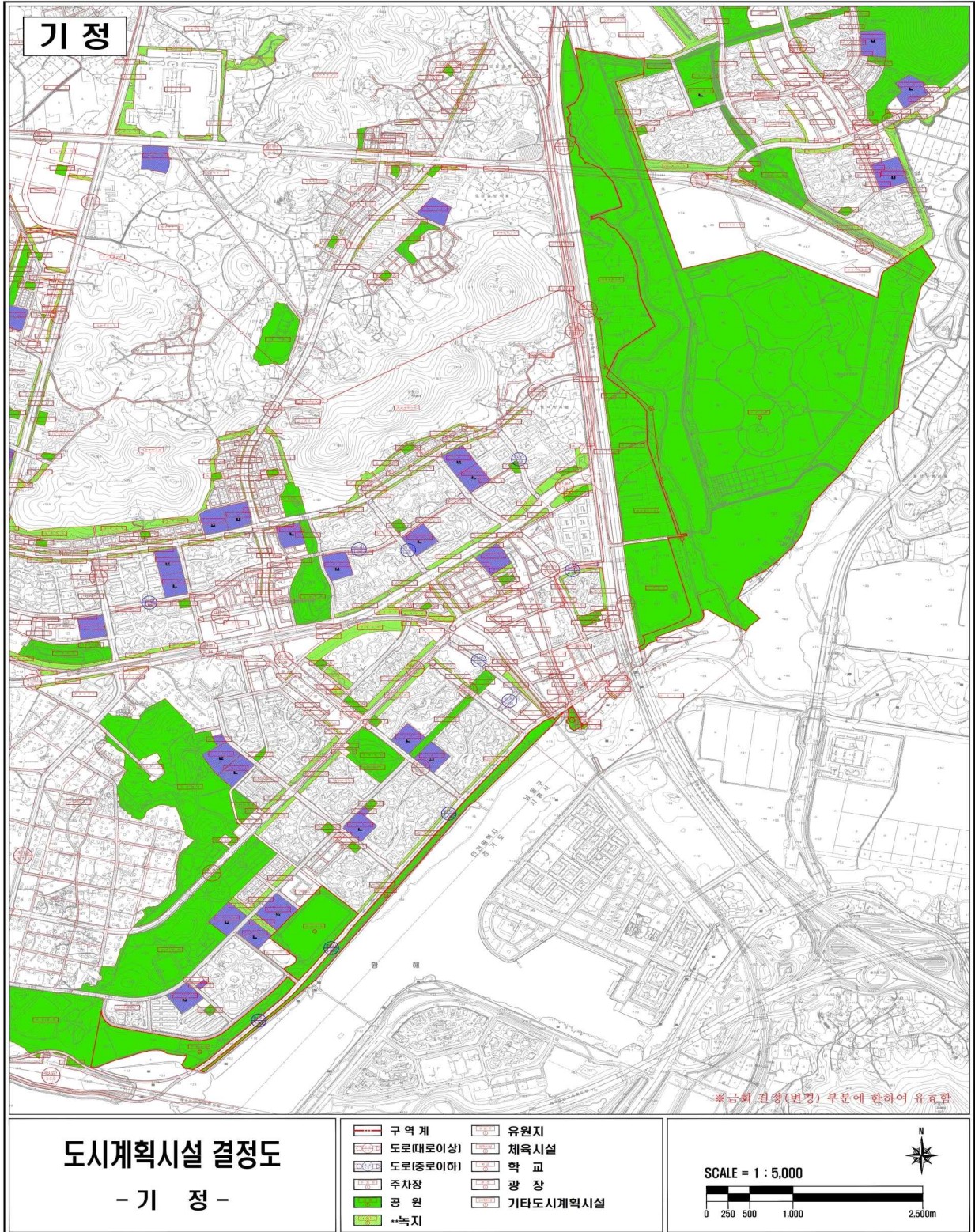
【붙임 2】

현황사진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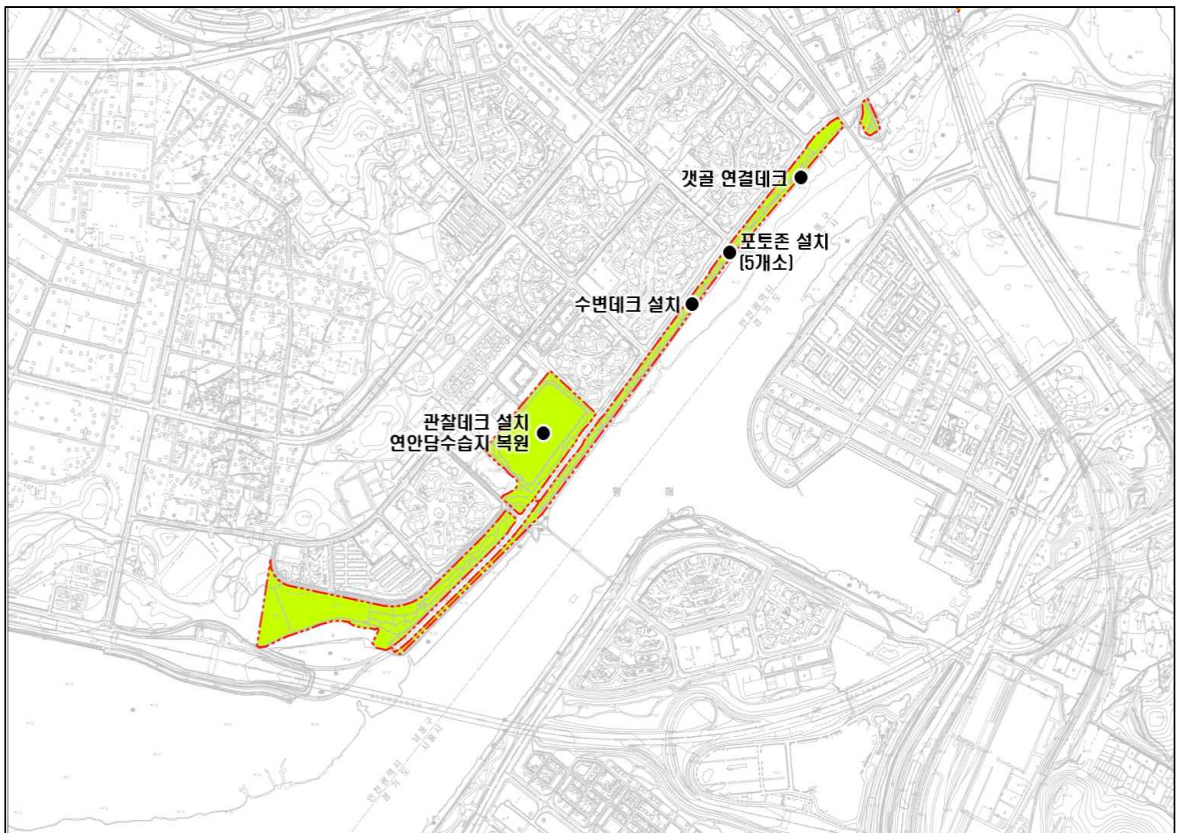
#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도





【붙임 4】

# 공원조성계획(안)



【붙임 5】

## 관계기관(부서) 협의 의견

기관 (부서)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<b>□ 인천시</b>			
항 만 연안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유수면 및 해안가에 설치된 친수보행로, 전망대 등에 대해 공원시설로 관리 필요</li> <li>○ 기 설치된 부인교 전망데크에 대해 공원 시설로 편입 검토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원 부지에 포함되는 시설물은 공원시설로 편입 및 관리 예정임.</li> <li>○ 공유수면에 대한 공원 결정은 향후 검토할 예정임.</li> </ul>	반영
자 연 재난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, 부지면적 감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재협의 대상은 아님</li> <li>○ 향후 실시계획 인가 전,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기 바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향후 실시계획 인가 전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·반영하겠음.</li> </ul>	추후 반영
수 질 하천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시설(소래공원) 내 장수천은 하천 기본계획 상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하천법 준수하여 하천구역 내 사업 시행</li> <li>○ 하천구역 내 수위 상승의 요인이 되는 시설 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변경 사유 발생 시 협의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협의의견에 따라 하천법 준수하여 사업시행 및 하천에 대한 계획 변경 시 별도 협의하겠음.</li> </ul>	반영
문 화 유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7조에 따라 3만㎡ 이상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, 국가지정 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거나,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국가유산청에 사전영향협의하고</li> <li>○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 실시하여 보고서를 구청장과 국가유산청장 등에 제출</li> <li>○ 지표조사 시 국가유산청에서 제시한 보존대책 이행하여 사업추진하고 사업계획 변경시 보존대책에 대해 재협의</li> <li>※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면서 영향 진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식영향진단 시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유산청과 사전영향협의 완료</li> <li>○ 지표조사 등 향후 절차 이행 시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하겠음.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사 중 국가유산으로 의심되는 유구, 유물 발견 시에는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국가유산청에 신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사시유구, 유물 등이 발견될 경우 협의 의견에 따라 조치·반영하겠음</li> </ul>	반영

기관 (부서)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지정 문화유산자료인 장도포대터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허용 기준(붙임)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, 시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검토하여 영향이 있다고 결정될 경우 문화유산법 제35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실시계획 수립 시 관련법에 따른 역사 문화 환경보존지역 행위허가 대상일 경우 별도 협의 하겠음.</li> </ul>	추후 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지 인근에 국가지정 및 시지정 문화유산 등이 입지하였을 경우, 문화유산 주변 역사 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건축행위 등 허가 대상 여부를 구에 확인하여 절차 이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실시계획 수립 시 국가지정 및 시지정문화 유산과 관련하여 건축행위 등 허가 대상여부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겠음</li> </ul>	추후 반영
도 시 계획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유수면(용도지역 미지정)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경우, 향후 도시관리계획 (용도지역) 결정에 대해 별도 협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재 협의는 기 결정된 공원의 도시관리계획 통합 결정 사항으로, 추후 필요 시 별도 협의 하겠음.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해취약성 확인서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입안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협의의견 반영하였음.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원과 중복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 (도로, 철도, 전기공급설비 등)에 대하여 내용 표기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협의의견 반영하였음.</li> </ul>	반영
도로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시계획시설(중1-302호선) 일부 구간이 중복결정 대상에서 제외, 일관된 시설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협의의견 반영하였음.</li> </ul>	반영
환 경 안전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승인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1-가-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실시계획 인가전 협의하겠음</li> </ul>	추후 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음·진동, 빛공해 등 주변 정온시설 및 자연생태계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강구하고,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치방안을 수립·이행하여야 함</li> <li>○ 습지보호지역에 인접한 지역도 체계적인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관리가 필요함.</li> <li>○ 토사 유출 등이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 수립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시행 시 협의 의견을 이행토록 조치하겠음</li> </ul>	추후 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해당될 경우 인·허가를 한 행정기간의 장이, 그날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, 사업내용 등을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권자(환경 안전과)가 통보할 수 있도록 할것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해당될 경우 협의 의견에 따라 별도 협의하겠음.</li> </ul>	반영

기관 (부서)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해양 환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자연생태계 보전을 주 목적으로 특별히 보전한 가치가 있는 습지지역 이므로,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송도 개별 습지보호지역 포함 등 관련 개발 계획의 변경 사항 발생시 별도의 사전 협의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재 도시관리계획 대상지에 송도 람사르습지 지역은 미포함 되나, 향후 국가도시공원 단계별 추진에 따라 변경사항 발생시 별도 협의 하겠음.</li> </ul>	반영
<b>□ 남동구청</b>			
미래 전략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사전협의 및 남동구 의견 적극 반영</li> <li>- 해오름공원 해안데크 설치 반영(소래어시장 ~ 해오름공원, 새우타워 ~ 해오름전망대 구간)</li> <li>- 소래 관광 활성화 및 주민 여가·문화 증진 시설 반영 및 소래포구 축제 고려</li> <li>- 기타 주민 요청 사항 적극 반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성계획 수립시 별도 협의 하겠음.</li> </ul>	추후 반영
농축 수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도포대지~군자대교 어선 출입항로를 공원 지정하는 사항으로, (어선)수면 이용이 공원 관련 법령 저촉 여부 검토</li> <li>○ 소래어촌계 및 인천수협에서는 남동구 논현동 66-52번지 연결 국가 어항 수역을 공원 구역(수면) 및 국가 공원에서 제외 요청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 어항 수역은 협의의견 반영하여 제외함, 향후 변경시 별도 협의하겠음.</li> </ul>	반영
안전 총괄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CCTV 신규설치 및 이설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</li> <li>- CCTV 설치 장소에 전기·통신망이 가공으로 입선 불가시 지중으로 공사</li> <li>- 설계용역 진행 시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함</li> <li>○ 추후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물 관리 이관시 협의 요청 바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시행 시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·반영하겠음.</li> </ul>	추후 반영
환경 보전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에 대한 검토 의견은 사업 시행 시 반드시 반영 조치</li> <li>○ 공사 및 운영 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또는 주변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거나,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추가로 별도 대책을 신속히 강구 시행</li> <li>○ 관련법 등에 의거 인·허가를 득할 것</li> <li>- 대기질 저감방안, 비산먼지 발생 등</li> <li>- 유류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경우를 대비한 방제 대책을 수립</li> <li>- 토사유출, 소음·진동 방지 대책 수립</li> <li>-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대책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시행 시 협의의견에 따라 별도 협의하겠음.</li> </ul>	추후 반영

기관 (부서)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공 원 녹지과	○ 소관 재산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추진 절차 및 관련법에 따라 협의 예정	○ 검토의견에 따라 협의 하겠음.	반영
	○ 공원·도로 중복결정은 「도시·군계획 시설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에 따라 각 시설 기능발휘 검토, 100만㎡이상 광역권 근린공원은 사무위임 사항에서 제외됨	○ 협의의견 반영하겠음.	반영
	○ 통·폐합하여 신설되는 공원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무위임 조례 등에 따라 100만㎡ 광역권 근린공원은 구 관리 권한·의무 없음으로 관리권 환원 ○ 해오름근린공원에서 매년 개최하는 지역축제인 ‘소래포구축제’ 개최 시 무상 공원 점·사용 권한 요청	○ 공원 점·사용에 대해 별도 협의하겠음.	-
	○ 국가도시공원 지정범위에 소래A,B공원 확장 계획 여부(시기) 및 소래어시장소 공원 포함요청 ○ 기타 시 사무위임 소관법에 따른 위임 공원에 대한 관리비 지급	○ 도시공원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기존 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으로 소래어시장소공원(사유지)은 미포함 ○ 위임공원에 대한 관리비는 별개 사안으로 별도 협의 예정	미반영
	○ 해오름근린공원 폐지 후 해수공급사업소 부지(논현동 775-1, 775-2)는 소래습지 생태공원 편입 제외 요청	○ 협의의견 반영하여 제외하였으며, 향후 변경 시 별도 협의하겠음.	반영
교 통 행정과	○ 향후 구역 지정 후 공원 진·출입로 위치, 내·외부 도로 체계 연계, 도로 확장, 그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상세 도면 제출과 적정성 검토 바람. ○ 공원 주차장은 최대한 확보하여 공원녹지과 협의 바람	○ 검토의견에 따라 추진 절차 이행 및 협의 하겠음.	추후 반영
치수과	○ 하수처리계획 검토사항은 현재 미수립 된 것으로 확인됨, 향후 하수처리계획 수립 완료 후 별도 협의 바람.	○ 현재는 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으로 추후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 하겠음.	추후 반영

기관 (부서)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<b>□ 관련 기관</b>			
인천 지방 해양 수산청	○향후, 어항 개발 시 개발행위 제한 등이 예상되므로 소래포구항 어항구역(수역)은 제외 필요	○어항구역(수역)은 협의의견 반영하여 제외함. 향후 필요시에 별도 협의하겠습니다.	반영
국 가 철도공단	○철도 부지인 논현동 775-1, 775-4는 매각 불가하며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에 동의하지 않음	○협의의견 반영하여 제외함	반영
경 제 자 유 구역청	○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(C) 람사르 습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 ○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변경 사항 발생 시 사전 협의	○현재 도시관리계획 대상지에 송도 람사르습지 지역은 미포함되나, 향후 변경사항 발생 시 별도 협의 하겠습니다.	반영
한 국 도 로 공 사	○일부구역이 영동선 도로구역과 중복되어 있으나, 허용 어려움 ○부득이하게 인접 구역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협의 (지역본부, 지사) 필요	○협의의견 반영하여 제외함.	반영